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박환희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제1345호

다. 발의일자: 2023.10.16.

라. 회부일자: 2023.10.23.

2. 제 안 사 유

-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은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장소를 인지하고 제한에 호응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또한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 설치로 규정되어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 이런 근거로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별도”를 “별표”로 수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나. 표지판 디자인을 수정함(안 별표).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규제·지시·보조 표지판)로 나뉘어 있고 제한대상 차량이나 제한 시간 등의 규정이 이전 규정을 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장소를 인지하고 공회전제한에 호응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바, 이를 단일화 및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공회전 제한대상 차량을 현행화하고, 표지판 종류를 기존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제2조제4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또한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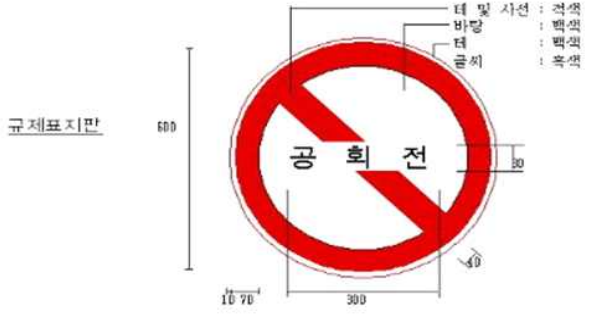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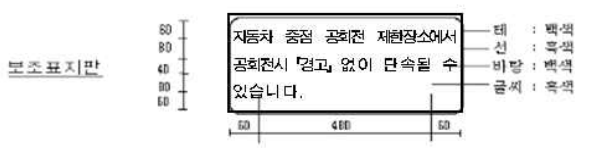


- 안 별표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¹⁾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3가지(규제, 지시, 보조)를 1가지로 통합하기 위한 것임.

여기에는 제한대상 차량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차종별 제한 시간을 삭제하며, 경고 없이 단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에는 색깔 등의 규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 역시 수정이 필요할 것임.

1) 제3조(제한장소 등) ②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란 자동차 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규제 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을 말한다.</p> <p>제3조(제한장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별표]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제3조제3항관련)</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표지판-----.</p> <p>제3조(제한장소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제3조제3항관련)</p>
 <p>규제표지판</p>  <p>지시표지판</p>  <p>보조표지판</p>	 

- 한편, 차종별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은 2015년 개정²⁾을 통해 대기 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제한표지판을 현행화 하지 않은 점은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특히,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안전 심사 당시에도 상위법 개정사항을 뒤늦게 파악한 부분에 대해 지적³⁾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후환경본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
[서울특별시조례 제5821호, 2015.1.2.,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741, 박성연의원 대표발의)